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일자 : 1998. 9.  
제출자 :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으로 별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를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단일 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 ’98. 5. 6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조례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나. 여비의 지급구분 (안 제3조)

-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
-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함.

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3. 근거법규

-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여비규정”
- 시 총무 12500 - 518호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여비규정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신 · 구 조문 대비 표

연 방	개 정 안
3. 국내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 . . . . · · · · ·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제17조”로 · · · · · (신설)	3.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 . . . . · · · · ·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 · · · · 4. 여비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으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6. 여비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국내여비규정 「별표1」 . . . . . · · · · · ,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 란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 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본다.	7. 여비규정 「별표1」 . . . . . · · · · · ,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지방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준용) (생략)	〈 삭 계 〉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4)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8. 10. 9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8. 10. 10

라. 위원회 상정 : '98. 10. 22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별개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하는 단일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 '98. 5. 6 행정자치부 시달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원수)

-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